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38
----------	-----

제출년월일 : 2026. 5. 28.

제 출 자 : 송파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처리, 소멸시효 완성 후 잔액 처리 및 할인보전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할인보전금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 나.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3항)
- 다. 상품권 소멸시효 및 환불기준 명시, 잔액 처리 규정 등 신설(안 제4조의3)
- 라. 조례 개정 전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부칙)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민법」 제184조
- 「상법」 제1조 및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페이 이용자 약관」 제11조 및 제12조
-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 약관」 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여성보육과)
-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라. 기 타

- 1) 개정문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별첨)
- 2) 입법예고: 2026. 4. 23. ~ 2026. 5. 13.(20일간)
- 3) 비용추계서: 붙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2”를 “법 제4조의2”로 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12조 중 “할인액”을 “할인보전금”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5.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p> <p>-----</p> <p>1.~5. (현행과 같음)</p> <p><u>6.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u></p>
<p>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p> <p>①~② (생략)</p> <p>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u>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④ 「<u>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 “법”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⑤ (생략)</p>	<p>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구-----</p> <p>-----</p> <p>-----</p> <p>-----</p> <p>-----</p> <p>④ 「<u>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p> <p>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p>	<p>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p> <p>① -----</p> <p>-----</p>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  
-----  
-----  
-----  
-----  
-----  
-----\*-----  
-----법 제4조2-----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  
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  
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  
금은 당초 재원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  
한다.

제12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2. (생략)

-----  
-----  
----- 할인보전금 -----  
-----

1.~2.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민법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상품권의 발행)

-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서울페이 이용자 약관

제11조 (유효기간) ① '상품권' 구매금액의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단, ‘시’는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수당’의 유효기간은 ‘시’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점부터 기산합니다.

④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객은 ‘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사’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의 금액에서 할인보전금의 비율에 따라 남은 잔액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제12조 (소멸 시효)** ①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판매대행사’에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대행사’가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 약관

**제8조 (소멸시효)** ①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의3 신설) 송파사랑상품권 소멸 시효 완성 후 낙전 자동환불로 제외수입 미귀속
- 관련 조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신설
- 비용 발생 원인 : 현행 조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송파사랑상품권 잔액(낙전)을 구 제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멸시효 완성 즉시 사용자 계좌로 자동환불하고 계좌 미등록 등으로 자동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1년간의 환불 신청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제외수입으로 귀속되던 낙전 금액만큼 구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비용 종류 : 재정수입의 순감소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의 제외수입 미귀속)

####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 기준일 : 2026. 4. 7. (서울시 자료 제공 기준)
- 추계 기간 : 조례 시행일(2026. 7. 예정)로부터 5년 (2026년~2030년)
- 가격 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 추계 전제 및 방법
  - 1차년도(2026) 수입 감소액은 현재('26.4.7.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되 환불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 약 81,000천원(81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비용추계일(26.4.7.) 기준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낙전 예정액은 사용자 사용 및 환불 여부 등의 변수가 있으므로 비용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2차년도(2027) 이후 수입 감소액은 향후 발생할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의 낙전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이는 이용자의 상품권 잔액 보유 및 사용 추이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계량적 추산이 곤란함
- 또한 송파사랑상품권 시효 완성 후 낙전 규모를 감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사용 독려 예정으로 예상 재정수입 감소액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용자의 계좌정보 미등록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낙전 (본인부담금)의 경우, 송파구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음

###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지출	◦ 해당없음						
	소계(a)						
수입	◦ 낙전 제외수입 미귀속	△81,000	추산곤란*(사용자 상품권 사용 추이에 따라 변동)				
	소계(b)	△81,000					
□총 비용(a-b)		△81,000					

※ 기준일 이후 1차~5차연도의 예상 수입은 이용자의 상품권 사용 추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불예정액 중 계좌정보 미등록으로 환불이 불가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송파구 세입으로 귀속될 예정임

### 4. 재원조달 방안

- 본 개정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존에 제외수입으로 귀속되던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을 이용자에게 환불함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만을 수반함

- 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전 자원 조달 계획은 없으며, 해당 금액은 본래 이용자가 상품권 구매 시 부담한 금액으로서 구민에게 반환하는 성격임

## 5. 덧붙이는 의견

- 낙전 수입의 가변성 및 계량적 추계의 한계
  - 송과사랑상품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낙전 규모는 매년 발행액, 이용자별 잔액 현황, 사용 추이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5년간의 총 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시효 만료 전 알림특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용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발적 잔액 소진이 확대될 경우 실제 낙전 발생 규모는 현재의 예상치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입 처리의 한계
  - 소멸시효 제도는 본래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시효이익의 포기를 강요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임.
  - 그러나 본 사안은 민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채권자인 상품권 이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시효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아니며, 상품권 자금을 운용하는 채무자인 송과구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환급을 시행하려는 것임
  - 따라서 단순히 법률상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구민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미사용 잔액(낙전)을 당연히 구(區)의 세입으로 확정하는 것은 제도 본연의 취지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음.

## 6. 작성자

- 작성자: 주 무 관      행정8급      노리랑
- 검토자: 경제진흥팀장      행정6급      조인환
- 결재자: 경제진흥과장      행정5급      이신권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재정수입 감소 -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 세외수입 미귀속

#### 가. 비용추계 방법

- 본 개정안에 따른 재정 영향은 기존에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예정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이 이용자에게 환불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감소임
- 1차년도(2026) 수입 감소 추계 산식
  - 2026. 4. 7. 기준 소멸시효 완성 후 미환불 본인부담금 잔액 = 약 81,000천원
  - 동 금액은 조례 시행 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되므로 구 세외수입 미귀속 = △81,000천원

#### 나. 2차년도 이후 추산 곤란 사유

- 시효도래 이후의 수입 감소액은 아래 요인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계량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함
  - ① 상품권 발행 규모 및 연도별 변동 : 송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예산 편성 및 국·시·구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향후 발행분에서 발생할 낙전 규모를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 ② 이용자 사용 추이 : 소멸시효 만료 전 이용자가 잔액을 얼마나 소진하는지는 개인별 이용 성향에 따라 상이하며, 만료 전 사용 독려 알림 등 정책 효과에 따라 낙전 발생률이 변동함.  
또한 판매대행점 변경으로 앱이 변경될 때 신규앱 미가입으로 잔액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존 앱의 소유권을 서울시로 하여 낙전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③ 상품권 사용 독려 효과 : 현재 서울페이앱에서 알림톡, 앱푸쉬, 메시지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품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상품권의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상의 사유로 2차년도 이후 비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량적 추계를 갈음하고 그 사유를 기술함

다. 연도별 낙전 예상 규모 참고 현황

- 아래는 기 발행된 송파사랑상품권의 낙전 예상액으로, 향후 계좌정보 미등록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예상금액 중 일부는 송파구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음.

구 분	'20년 발행 ( '25 소멸)	'21년 발행 ( '26 소멸)	비 고
송파사랑상품권 낙전	35백만원	46백만원	'22년 이후는 추산 불가
합 계	35백만원	46백만원	